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2023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생명연구자원과를 신설하여 생명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현황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, 이에 필요한 인력 2명(4급 1명, 5급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0. 0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은 별표 3과 같다.

제30조제2항 중 “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·정보화담당관·연구산업진흥과장·연구제도혁신과장·정보보호산업과장”을 “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·정보화담당관·생명연구자원과장·연구산업진흥과장·연구제도혁신과장·정보보호산업과장”으로 한다.

제9장의 제목 “한시정원”을 “한시조직 및 한시정원”으로 한다.

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,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(생명연구자원과) ① 생명연구자원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생명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현황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·시행
2. 생명연구자원 관련 법령·제도의 운영·발전
3.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종합
관리 및 활용 체계 조성
4.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·보존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
추진
5.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,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등 생
명연구자원 관련 기관 지정·육성
6. 생명연구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증진
7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 관리

③ 생명연구자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.

별표 12를 신설한다.

별표 13의 제목 중 “(제32조 관련)”을 “(제33조 관련)”으로 하고, 1. 제32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1년 2월 28일) “제32조제1항”을 “제33조제1항”으로 하며, 2. 제32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2년 4월 30일) “제32조제2항”을 “제3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(제32조제3항 관련)

생명연구자원과(존속기한: 2023년 10월 31일)

총계	2
일반직 계	2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, 공업사무관, 통계사무관, 환경사무관, 시설사 무관, 전산사무관, 방송통신사무관, 보건사무관, 사서사 무관, 기상사무관, 농업사무관, 임업사무관, 수의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, 식품위생사무관, 항공사무관 또는 연 구관	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②·③ (생략)

제30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

① (생략)

②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·정보화담당관·연구산업진흥과장·연구제도혁신과장·정보보호산업과장 및 전주전파관리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제9장 한시정원

<신설>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·정보화담당관·생명연구자원과장·연구산업진흥과장·연구제도혁신과장·정보보호산업과장

---.

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

제32조(생명연구자원과) ① 생명연구자원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생명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현황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·시행
2. 생명연구자원 관련 법령·제도의 운영·발전
3.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종합 관리 및 활용 체계 조성

<u>제32조</u> (생 략)	4. <u>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·보존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 추진</u> 5. <u>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,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등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 지정·육성</u> 6. <u>생명연구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증진</u> 7.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 관리</u> ③ <u>생명연구자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.</u> <u>제33조</u> (현행 제32조와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